

의안번호	제3073호
의결	2026.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3. 13.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3호
----------	--------

제출연월일: 2026. 3. 13.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관리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성군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다. 업무(안 제4조)

라. 자료의 열람·대출 등 도서관 운영 규정 정비(안 제5조~안 제8조)

마. 운영위원회 구성, 직무 및 심의 사항(안 제9조~안 제11조)

바. 위탁운영(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편성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 사항 없음[복지지원과-5445(2026. 1. 30.)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79호
 - 가) 예고기간: 2026. 1. 23.~2026. 2. 1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 기간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 부지 및 내·외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외 강의실, 휴게공간, 부설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책뚝병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
2. 고성동부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행정자료 수집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행
4.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열람, 대출의 경우 도서의 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군수는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대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

2항에 따라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문화·교육·도서관·출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이용 규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서비스 개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재위탁, 운영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운영 사항(제8조제1항 관련)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최대 금액)
최초 3시간	3시간 초과 시(10분마다)	
무료	200원	4,000원

2.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

가. 유료 운영시간

- 평일(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요금 징수 방법

- 자동차가 주차장에 입차한 후 출차 시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외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 시작 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감면 사항

전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용무로 주차한 차량 중 해당 부서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주차요금을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 대상이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 조치한다.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마. 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차된 자동차 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사.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거부 사항

-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군수가 군 행사 등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사 용 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비 고
복 사	A4	1매	30	전자복사기
	B4	1매	40	
인 쇄	A4	1매	60	프린터기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부설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및 운영
- 소요예산
 - 무인정산기 설치 1식, 70,000천 원
 - 주차 수입: 10대(하루 평균 유료 주차차량)×1,800원(평균 요금)
×300일(운영일)=약 5,400천 원(연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무인정산기 설치 비용이 70,000천 원으로 예상되나, 설치 후 운영 비용은 주차요금(수입)에서 충당하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최 다 원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 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별표7과 같다.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